

<p>와 2以上의 自治區와의 協議調整事項, 市·道經濟協議會에 提出할 案件에 관한 事項, 地域經濟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와 有關機關의 協議調整 事項등입니다.</p> <p>第12條 實務委員會에서는 案件의 事前協議 및 實務的検討를 할 수 있으며 構成과 運營에 관한 사항도 協議會가 決定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이 條例案을 當 生活環境委員會에서 1991年 11月 20日 第2次 生活環境委員會 會議에 上程하여 서울特別市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質疑 答辯過程을 거쳐 審查하고 委員會 全體會議에서 逐條審議한 결과 第12條 實務協議會를 實務委員會로 修正하자는 李元局議員의 修正動議와 再請이 있어 이에 대한 討論後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p> <p>그러나 少數意見으로 第3條 3項 議員의 構成에서 市民을 代表하는자 약간명과 勞動界를 代表하는 약간명을 挿入하자는 意見도 開陳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후 本條例案이 오늘 本會議에 上程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審查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는 當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查報告드린 대로 審議議決 주시기를 바랍니다.</p> <p>이상으로 서울特別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에 대한 審查report을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金瓊會 崔 浩議員으로 부터 審查report를 들으셨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 异議有無습니까?</p> <p>(「異議有無입니다」하는 議員 있음)</p> <p>그러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権 3打)</p> <hr/> <p>(參 照)</p> <p>서울特別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年 11月 20日 生活環境委員會</p>	<p>1. 審查經過</p> <p>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1年 11月 14日, 서울特別市長 나. 回附日字: 1991年 11月 18日 다. 上程日字: 第52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第2次 生活環境委員會(1991年 11月 20日)上程, 質疑, 答辯, 討論, 議決</p> <p>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 金東勵 產業經濟局長)</p> <p>가. 提案理由 1991年 7月 20日 大統領令 第13430號로 公布된 市·道 經濟協議會의 設置 規程에 따라,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主要施策의 效率의in 推進과 地域經濟에 관한 主要 懸案을合理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事項임.</p> <p>나. 主要骨子</p> <p>1) 協會의 審議事項(案 第2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主要施策 및 市의 經濟社會development計劃 事項 ○地域經濟에 관하여 市와 2以上의 自治區와의 協議, 調整事項 ○市·道 經濟協議會에 提出할 案件에 관한 事項 ○地域經濟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와 有關機關의 協議, 調整事項 <p>2) 協議會 構成-30人 以內(案 第3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委員長: 副市長 ○副委員長: 企劃管理室長 ○委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의 經濟關聯 室·局長 • 自治區의 副區廳長等 약간명 • 經濟關聯 主要 地方官署, 公共機關, 金融機關, 經濟團體, 企業體의 代表 또는 副代表級에 該當하는 者 • 地域經濟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많은 자 ○幹事: 商工課長 <p>3) 協議會의 會議(案 第6條 ②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 年2회
---	---

<p>○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2) 議案提出(案 第7條)</p> <p>○ 위원장은 市 및 自治區와 각 委員에게 會議 開催 20일전까지 議案을 提出토록 通報하고 通報받은 機關은 會議 開催 10일 전까지 提出</p> <p>5) 實務委員會(案 第12條)</p> <p>○ 案件의 事前 協議 및 實務的 檢討</p> <p>○ 構成 및 運營事項 : 協議會 決定</p> <p>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p> <p>(專門委員 : 성태진)</p> <p>○ 이 條例(案)은 1991년 7月 20日 大統領令 第13430號로 公布된 市·道經濟協議會의 設置 規程에 따라, 地域經濟의 活性화를 위한 主要施策의 效率적인 推進과 地域經濟에 관한 主要懸案을 合理적으로 解決하기 위한 사항을 協議하기 위하여 많은 專門人 들로 構成된 地域經濟協議會를 設置코자 하는 條例를 制定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事案임.</p> <p>○ 斯界의 專門人們이 오랜 시간을 두고 각 方面의 모든 可能性을 檢討하여 効率의 極大化를 為하는 것이 모든 市民을 為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韓國經濟가 危機에 처했다고 보는 것은 눈앞의 利害에만 窪陥여서 卽興의으로 處理하였을 뿐 長期的인 眼目이 欲었기 때문임.</p> <p>○ 본 서울特別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은 第2條(機能)에서 審議할 内容들을 제대로 實踐하기 위해서는 地域經濟活性化에 寄與할 수 있는 專門人們을 대폭 收用하여야 할 것이며, 政策決定過程에서도 반드시 이 協議會를 거쳐 으로써 市民의 意論을 收斂한 効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事前 段階으로 본 條例(案)을 通過시키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됨.</p> <p>4. 修正案 要旨</p>	<p>※修正動議案 提案者 : 李元局議員</p> <p>○ 본 條例(案)은 委員會全體會議에서 逐條審議하는 過程에서 第12條의 實務協議會를 實務委員會로 修正하자는 李元局議員의 修正動議와 再請이 있어 이에 대한 討論 後 修正할 것을 제안함.</p> <p>5. 審查 結果</p> <p>○ 修正案 可決(在籍委員 14명 중 出席 13명, 賛成 13명 反對 0명)</p> <p>6. 少數意見의 要旨</p> <p>○ 少數意見으로는 第3條第3項(委員의 構成)에서 “市民을 代表하는 者 약간명”과 “勞動界를 代表하는자 약간명”을 插入하자는 意見도 開陳 되었음.</p> <p>서울特別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에 대한修正案 제안년월일 : 1991년 11월 20일 제안자 : 생활환경위원장</p> <p>1. 修正 理由</p> <p>○ 第12條(實務協議會)의 内容은 實務委員會 내에 實務協議會가 構成되는 것이므로 전체문구상으로 볼 때,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는 内容이므로 “實務協議會”는 “實務委員會”로 修正되어야 함.</p> <p>2. 主要 骨子(修正 内容)</p> <p>○ 實務協議會를 實務委員會로 改稱(案 第12條)</p> <p>서울特別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에 대한修正案 서울特別市 地域經濟協議會 條例(案)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案 第12條 “實務協議會”를 “實務委員會”로 한다.</p>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수정안 대비표		
제定案	修正案	또는 副代表級
第12條(實務協議會)	第12條(實務委員會) …	• 幹事 : 商工課長
協議會上程案件	다. 協議會의 會議(案 第6條 ②項)
의 事前協議등 實務的檢討를 위하여	• 定期會議 : 年2回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實務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 臨時會議 :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協議會가 정한다.	라. 議案 提出(案 第7條)
		• 委員長은 市 및 自治區와 各 委員에게 會議 開催 20日前까지 議案을 提出토록 通報하고 通報받은 機關은 會議 開催 10日前까지 提出
		마. 實務 協議會(案 第12條)
		• 事項의 事前 協議 및 實務的 檢討
		• 構成 및 運營 事項 : 協議會 決定
		○ 關聯法規 : 市·道經濟協議會 規程(大統領令 第13430號)
서울特別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서울特別市 條例 第 號
提出年月日 : 1991年11月 日		서울特別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提出者 : 서울特別市長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市·道經濟協議會規程
<制定理由>		第9條에 依據 地域經濟活性화를 위한 主要 施策과 地域經濟에 관한 主要懸案의 效率的 推進에 關한 事項을 協議하고자 市·道經濟協議會 規程(大統領令 第13430號, '91.7.20公布) 第9條(地域經濟協議會의 設置)에 根據하여 制定
<主要骨子>		第2條(機能) 協議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關하여 審議한다.
가. 協議會 審議 事項(案 第2條)		1. 地域經濟活性화를 위한 主要施策에 關한 사항
• 地域經濟活性화를 為한 主要施策 및 市의 經濟社會發展計劃 事項		2. 市가 樹立하는 中長期 經濟社會發展計劃에 關한 사항
• 地域經濟에 關하여 市와 2以上의 自治區와의 協議, 調整 事項		3. 地域經濟에 關하여 2이상의 自治區와 市와의 協議調整이 필요한 사항
• 市·道經濟協議會에 提出할 案件에 關한 事項		4. 市·道經濟協議會 規程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經濟協議會에 제출할 案件에 關한 사항
• 地域經濟에 關하여 地方自治團體와 有關機關의 協議, 調整 事項		5. 地域經濟와 關하여 地方自治團體와 有關機關 간에 協議, 調整이 필요한 사항
나. 協議會 構成 - 30人 以內(案 第3條)		6. 地域經濟에 關하여 地方自治團體 또는
• 委員長 : 副市長		
• 副委員長 : 企劃管理室長		
• 委員 : 市一經濟關聯室局長		
自治區一副區廳長 中 若干名		
經濟關聯 地方官署, 公共機關,		
經濟團體 및 企業體의 代表		

<p>有關機關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第3條(構成) ① 协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며 副委員長은企劃管理室長이 된다. ③ 委員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자 중에서 市長이 지명 또는 委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市의 경제관련 실, 국장 2. 自治區의 副區廳長 중 약간명 3. 經濟關聯 주요 地方官署, 公共機關, 金融機關, 經濟團體, 企業體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地域經濟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많은 자 <p>④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上程할 議案을 제출한 機關의 대표 또는 副代表級에 該當하는 자를 당해 协議會에 한하여 위원의 資格으로 參席하게 할 수 있다.</p> <p>第4條(委員長의 職務) ① 위원장은 會務를統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補佐하며, 위원장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대행한다.</p> <p>第5條(幹事) 协議會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幹事 1인을 두며, 간사는 商工課長이 된다.</p> <p>第6條(會議開催) ① 委員長은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年2回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第7條(議案의 提出) ① 委員長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市 및 自治區와 經濟關聯機關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上程할 議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通報받은 機關은 협의회에 上程한 議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p>	<p>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議案에 대하여 關係機關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參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p> <p>第8條(案件의 配付) 협의회에 附議할 議案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不可避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p> <p>第9條(意見의 聽取) 협의회는 葉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第10條(會議結果에 대한 措置) ① 협의회를 開催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會議錄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市長은 협의회에서 審議決定한 事項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推進狀況을 종합하여 차기 協議會에 通報하여야 한다.</p> <p>第11條(手當 등) 위원이 會議에 參석하거나 委員會의 업무와 관련하여 公務로 國內·外 여행할 때에는 豐算의 範圍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지급할 수 있다.</p> <p>第12條(實務協議會) 협의회 上程案件의 事前協議등 實務的 檢討를 위하여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p> <p>第13條(施行規則)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hr/> <p>〈参考 資料〉</p> <p style="text-align: center;">市·道經濟協議會 規程 (大統領令 第13430號 : '91.7.20)</p> <p>第9條(地域經濟協議會의 設置) ① 協議會에 提出할 議案에 對한 意見의 收斂, 調整을 為하여 各 市·道에 地域經濟協議會를 設置</p>
--	--

<p>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地域經濟協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當該 市·道 條例로 定한다.</p> <p>2.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10時 51分)</p> <p>○ 議長 金瓊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権 3打)</p> <p>社會福祉委員會의 車奉五委員長 나오셔서 審查經過와 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社會福祉委員長 車奉五 社會福祉委員長 車奉五입니다.</p> <p>지난 11月 14日 서울市長으로 부터 接受되고 第52回 第2次 本會議에서 社會福祉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 市立社會福祉施設등 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李浩助保社局長으로 부터 提案說明을 자세하게 듣고 진지한 質問과 討論을 거쳐서 이 案이 타당하다고 느껴서 우리 社會福祉委員會에서는 滿場一致로 決議를 하였습니다.</p> <p>그 内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인물가운데 잘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불우한 청소년의 自立基盤을 造成하고 無依無託한 老人們의 老後保護를 위하여 건립한 엘림福祉타운이 서울市에 寄附採納を 完了하게 되었습니다. 엘림職業訓練院 및 엘림敬老院을 서울特別市 市立訓練院 및 養老院으로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첫째, 서울特別市 市立엘림職業訓練院으로 14歲以上 24歲以下의 低所得層 未進學 青少年에 대한 職業訓練과 訓練生의 就業斡旋 및 事後管理를 하고자 합니다.</p> <p>둘째, 서울市 市立엘림敬老院은 老人福祉法施行規則 第8條에 의거하여 불우노인을 收容保護하고 收容老人들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相談, 指導하는 機能을 갖게되는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신 유인물, 審查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이 案을 채택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 議長 金瓊會 車奉五委員長으로 부터 審查報告書를 들으셨습니다.</p> <p>그리면 서울特別市立 社會福祉施設등 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异議有으십니까?</p> <p>(「異議有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그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権 3打)</p> <hr/> <p>(參 照)</p> <p>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p> <p style="text-align: right;">審查報告書 1991年 11月 日 社會福祉委員會</p> <p>1. 審查經過</p> <p>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1991年 11月 14日 서울特別市長</p> <p>나. 回附日字: 1991年 11月 14日</p> <p>다. 上程日字: 第52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第1次 社會福祉委員會('91.11. 21) 上程</p> <p>2. 提案說明의 要旨</p> <p>(提案說明者: 서울特別市 保健社會局長 李浩助)</p> <p>가. 提案 理由</p> <p>不遇 및 未進學 青少年의 自立基盤 造成 및 無依託老人의 老後生活保護를 為하여 建立한 엘림福祉타운施設物의 寄附採納完了에 따라, 엘림職業訓練院 및 엘림敬老院을 서울特別市 市立訓練院 및 養老院으로 設置運營하고자 함.</p> <p>나. 主要 骨子</p> <p>1) 施設의 名稱 및 管掌部分 新設 (1) 서울特別市 市立엘림職業訓練院 ○ 14歲以上 24歲以下의 低所得層 未</p>
--	---